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4호, 2017. 6. 2.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1. 1. 5. ~ 1. 12.) 중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mm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mm 이상 40mm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mm 이상 40mm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6월 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
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내열강 JIS의 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 니켈합금강 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 LNG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mm) × 너비(mm) × 길이(mm)]이 12×55×6,000, 16×55×6,000인 것
4. 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 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4 ~ 38이고 지름이 3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관 이음쇠 및 유압용 육각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1~23이고, 허용공차가 H11이며, 대변거리(단위: mm)가 7.9, 9.5, 11.1, 12.0, 12.7, 14.0, 14.2, 15.0, 15.8, 16.0, 17.0, 17.4, 18.0, 19.1, 20.6, 22.0, 22.2, 23.8, 24.0, 25.0, 25.4, 26.9, 28.5, 30.0, 31.7, 32.0, 33.3, 34.9, 36.0 또는 38.1인 것
 - 나. 스테인리스스틸 원형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4~28이고, 허용공차가 H9이며, 지름(단위: mm)이 6.0, 10.0, 12.0, 13.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0.0, 32.0, 35.0, 40.0, 42.0 또는 50.8인 것
6. 가솔린 자동차 연료펌프모터 샤프트(Shaft)용 원형강(SUS440C)으로서 지름 5.1mm, 길이 2,000mm, 직경공차 $\pm 0.02\text{mm}$ 이내, 진직도 $\pm 0.018\text{mm}$ 이내, 진원도 0.012mm 이내, 표면거칠기 3.2z 이내 및 표면경도 HRB96(Max)인 것
7. 자동차 연료조절기밸브용 원형강(SUS420F)으로서 규격[지름(mm) × 길이(mm)]이 $7.1(+0.05/-0) \times 2,500(+30/-0)$ 또는 $11.5(+0.05/-0) \times 2,500(+30/-0)$ 인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mm 이하인 것
9. 전자부품 가공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000U)으로서 지름이 1mm 이상 4mm 이하인 것
10.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정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일 것

-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15% 이하일 것
 -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5% 이하일 것
 -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2% 이하일 것
 -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일 것
 -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 아.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25% 이하일 것
11.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정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벨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일 것
 -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30% 이하일 것
 -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40% 이하일 것
 -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3% 이하일 것
 -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일 것
 -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 아.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50% 이하일 것
12.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두께가 9mm 이상 13mm 이하이고 너비가 15mm 이상 100mm 이하인 것
 - 나. 두께가 13mm 이상 20mm 이하이고 너비가 15mm 이상 150mm 이하인 것
13.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인 SF20T 및 SF20E 제품으로서, 지름이 2.5mm 이하이고 길이가 12mm 이하인 것
1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 금속섬유제조용 Fe-Cr-Al 내열합금원형강으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 이상일 것
 - 나.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3% 이상일 것
 - 다. 지름이 10.0mm 이상일 것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 본	모든 공급자	15.39
인 도	비라즈 프로파일즈 리미티드(Viraj Profiles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51
	그 밖의 공급자	15.39
스페인	모든 공급자	15.39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